

1. 신규허가

- 가. (주)삼 조
 -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제 89 호
 - 대표자 : 계 기 수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600번지
 - 품 목 : 사료첨가제 제조
- 나. 한국통상
 - 수입자확인 제 101 호
 - 대표자 : 염 상 열
 -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0-7
 - 품 목 : 동물용의약품외품 수입업

2.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

- 가. (주)세 원
 - 대표자 : 이삼우 → 임 병 학
- 나. (주)우성양행
 - 대표자 : 김영래 → 황 성 수
- 다. OMC 해외통상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41-2 대호빌딩 201호로 변경
- 라. (주)이레케미칼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오금동 140-11로 변경
- 마. (주)엘지화학
 - 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104-1로 변경

3. 뉴켓슬병 불활화백신 바이러스주 교체

농림수산부에서는 1996년 3월 7일 수의과학연구소 및 관련업체들과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뉴켓슬병 불활화백신 사용 바이러스주를 강독주 및 중간독주에서 약독주로 교체기로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에 들어갔다.

- 가. 강독주 사용백신 : 1996년말까지 약독주사용백신으로 교체 (수입품 포함)
- 나. 중간독 사용백신 : 백신 제조회사와 협의하여 교체계획을 1996년말까지 농림수산부에 제출
- 다. 이후 강독을 사용하는 백신에 대하여는 신규품목 허가 불허

4. 수의과학연구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종전에 실시하던 교대 '토요일전일근무제'를 3월 2일을 시점으로 격주로 전일근무하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5. 동물약품 판촉 광고시 잔류방지 표어 삽입

협회에서는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분야의 양축농가 지도·계몽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 업체별로 언론매체 및 축종별 전문잡지에 게재하고 있는 광고지면에 잔류방지를 보 할 수 있는 표어나 어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적합한 표현 등을 검토하여 적용할 것을 홍보하였다.

6. [품질관리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협회는 업계 생존권 보존 차원에서 동물약품의 안전사용과 잔류방지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최근 특별관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에 문제가 제기된 클로람페니콜제제의 적정 관리 방안에 대하여 3월 8일 개최된 「동물약품 품질관리 특별 대책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금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최근 우유위생 및 간장 유해 논란 등으로 축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여론등을 감안, 민간 자율적으로 응도와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소포장 단위로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등의 회의결과를 강력 권고하며 기타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사용에 대한 각종 홍보노력을 다음과 같이 실시키로 하고 그 결과를 제조(수입)업체에게 알려 후속적인 조치 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 클로람페니콜제제 관리 방안

- 1) 권고 내용
 - 애완동물 전용 포장단위로 허가 변경
 - 업체 판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허가 취소
- 2) 허가 변경 및 취소 기한
 - 96년 6월 30일까지

나. 「제1차 품질관리 특별대책 위원회」, 협의 결과

- 1)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기준 홍보용 책자 제작
 - 수의과학연구소의 등 기준에 대한 검토후 제작
 - 충분히 제작하여 각 기관 및 양축농가 배부
 - 제작 비용은 업체별 광고비로 충당
- 2) 유해물질 잔류방지 양축농가홍보용 비디오제작
 - 제작을 위한 사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제작
 - 회원업체에 배부하여 양축농가 교육시 시청각 교재로 사용
- 3) 클로람페니콜 제조 및 유통 관리 방안
 - 애완동물 전용 포장단위로 허가 변경
 - 업체 판단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허가 취소
 - 결과를 농림수산부에 보고
- 4) 「사료내 잔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고시에 대한 대응 방안
 - 협의회를 통하여 대응 방안을 결정한 후
 - 결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농림수산부와 다각적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개정 요구 예정

7. 단체인명 변경

사) 대한가금처리협회는 4월 2일부로 사)한국위생계육 산업협회(약칭, 한국계육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거 가금처리(도계) 단일기능에서 생산, 처리, 가공 및 유통까지 통합경영개념으로 조직개편하고 회원의 폭도 양계 관련 전반으로 확대하는등 국제화에 맞는 단체로 탈바꿈 하였다.

8. 동물약품의 올바른사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동물용의약품 올바른 사용에 관한 96년도 수의과학연구소 정기 학술 세미나가 3월 29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개최 되었다. 기획·학술부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이번 세미나는 '동물용의약품 올바른 사용'이란 주제를 가지고 가. 효율적인 복합 항생제 사용 - 김종만
나. 합성 항균제의 안전사용 대책 - 정갑수
다. 돼지 위축성 비염 백신의 연구동향 및 개선 방향 - 여준
라. 동물약사 업무에 관한 간담회등의 내용으로 개최하였다.

9. 유방염치료용 연고제제 품목 일제변경

농림수산부의 유방염 치료용 연고제 색소첨가 방침에 따라 협회에서는 각 업체별 허가 변경서류를 취합하여 농림수산부에 일괄적으로 허가변경 신청코자 다음과 같이 준비하고 있다.

가. 색소 첨가 방안

- 1) 첨가 시기 : 96년 7월 1일 이후 생산(수입)하는 항생·항균제를 주료한 연고제제
- 2) 첨가 색소 : 식용색소 청색1호 (Brilliant blue F.C.F)
- 3) 색소 규격 : 10-20 μ m 이하
- 4) 첨 가 량 : 25mg/분방
- 5) 연고제 입자 : 149 μ m 이하

나. 색소 공급 방안

- 1) 해외에서 가공하여 수입(중국 약 43볼대)
- 2)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적격성 여부 검토한 후 공동 수입 예정

다. 품목 변경 방안

- 1) 허가변경 서류를 협회에서 일괄취합 제출
- 2) 서류중 시험기준 및 방법 관한 부분 제출 면제

10.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및 잔류방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 내용에 대한 감수 요청

협회내 [품질관리 특별대책위원회] 발의 안전중에서 기획·추진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과 유해물질 잔류 방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개요를 농림수산부와 수의과학연구소에 아래와 같이 감수 및 협조요청을 하였다.

가. 제작일정 : 96년 4월말 제작시작

나. 제작처 : 매일경제 케이블TV 제작팀

다. 제작내용 :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과 잔류방지
라. 협조 요청 부분

- 1)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국내 축산업 현황과 대응 전략 - 농림수산부 관계관 출연
- 2)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 10대 수칙 - 수의과학연구소 관계관 출연
- 3) 추진 계획
가) 제작개요와 시나리오에 대하여 관계기관 감수

나) 촬영 일시 및 세부 사항은 추후 보고

11. “수입추천 요령” 공고

수출입공고중 개정고시(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27호 : 1995. 12. 29)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협회의 요건확인 품목인 유당에 대한 추천요령을 협회공고 제1996-1호(1996. 3. 4)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한국동물약품협회 공고 제1996 - 1호

수출입공고 제8조제1항의 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27호 : 95. 12. 29)에 의거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에 대한 한국동물약품협회 수입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996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장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의 수입 추천요령

1. 유당의 수입 추천품목은 다음과 같다.

HSK	대상품목
1702 1	유당과 유당 시럽 초류와 기타
1702 11	건조상태에서 측정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1702 11 1000	유당(동물약품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1702 19	기타
1702 19 1000	유당(동물약품 제조용의 것에 한한다)

※ 동물용의약품 제조용은 96년 7월부터 자동승인 품목

2. 수입 기준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한 품목 및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조 신고한 품목의 제조 원료에 한한다.

3. 수입추천 대상자

- 가. 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록규칙에 의거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자
나. 기타 농림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자

4. 처리 기간 : 3일

5. 구비 서류

- 가. 수입 승인신청서 5부
나. 물품매도약약서(Offer sheet) 사본 1부
다.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시에 한함)
라. 원료 사용 및 제품 생산 계획서 1부

- 부 직 -

1.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동물약품협회 공고 제95-4호는 폐지 한다

12. 춘계심포지움 안내

한국가금학회(회장 : 정선부)에서 육용종계의 생산성 향상방안이란 주제로 4월 19-20일 양일간에 걸쳐 도쿄 글로리콘도미니움에서 춘계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13. '96 농림수산 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농림수산부에서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6년도의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 과제를 공모하고 있어 회원사에서 실용성있는 우수한 과제로 응모할 것을 홍보하였다.

14. '96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추가배정

'96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량이 901.2톤이 증량·배정된 바 증량분을 업체별로 다음과 같이 추가 배정하였다. 이 추가배정량은 하반기이후 업체별 실사용량 등을 종합하여 업체별 부족분에 대한 세부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단위 : 톤

업체명	기배정량	추가배정량	계
고려케미칼	17.5	-	17.5
과학사료	17.5	-	17.5
과학축산	8	-	8
남전물산	35	157.5	192.5
녹십자수의	10	-	10
대성미생물	17.5	6.5	24
대한신약	52.5	245	297.5
동방	17.5	17.5	35
삼양약화학	17.5	-	17.5
서울신약	35	60	95
우성양행	17.5	-	17.5
유니화학	5	5	10
유한양행	16	-	16
이화약품	3	-	3
이글케미칼	5	-	5(-5)
제일화학	35	-	35
삼우화학	17.5	-	17.5
퓨리나코리아	166.8	389.7	556.5
한국고킹	12	-	12
한국미생물	-	-	-
바이엘코리아	35	-	35
한동	35	20	55
한성약품	15	-	15
한풍산업	8	-	8
계	598.8	901.2	1,500.0

15. 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농림수산부 주최 "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가 동물약품 제조(수입)업체 대표자 및 생산부서 책임자와 농림수산부, 수의과학연구소,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95년 4월 17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개최 되었다.

16. 동물용 항생물질제제 검정효율화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국가검정 동물용 의약품중 항생물질제제의 검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에 총 3인의 지원인력을 파견하여, 항생물질제제중 산제 및 첨가제의 검정기간이 96년 4월 현재 2

7일에서 15일로 현저히 단축되고 있으며, 수의과학연구소에서도 총 1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무균실 신설(96년 4월 20일 준공) 및 HPLC등 기구구입(96년 10월 말 설치예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검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중이다.

17.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자료 수집

협회에서는 보사부에서 고시한 동 기준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업체에서 후기 사료에 사용이 가능한 무잔류 약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과 년차별로 검사대상품목 선정에 따른 문제점 등이 제기되어 관련 부처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협의한 결과, 「배합사료제조용동물약품첨가사용기준」상 후기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약품에 대하여는 자기 등 허용기준 개정시 주무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당해년도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사료공장 등에서 별도의 생산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관계 등의 사유로 사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해당 약품을 제조·공급하는 동물약품 업체의 매출감소와 양축 생산비 증가는 물론 가축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약품별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건의코자 업체의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검색·산출하여 협회에서 제출받아 산출근거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협의를 할 예정이다.

18. 임시이사회 개최

협회는 1995년 2월 28일 협회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개정(안)'을 개정·의결 하였다.

본 규정은 협회직원 3명을 수의과학연구소 검정화학과에 파견하여 산제(경구투여제 및 사료첨가제)를 별도로 검사한후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합격통보하여 검정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비용 각출비용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의결에 의해 협회에서는 인건비등 년 3,000만원씩의 추가비용을 지원하고,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시설비 4,000만원과 분석기자재 6,000만원등 1억원의 지원 및 시설사용공간 등을 지원한다. 이로인해 산제(사료첨가제 및 경구투여제) 제조업체에서는 관련 검정신청시 건당 20,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협회 검사요원들의 기술습득 및 기자재구입완료 시점부터 검정기간이 기존의 30일에서 7-10일로 단축되게 되어 제조업체에 돌아가는 이익은 수배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 휴약기간 준수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합시다.

19. 유방염치료 연고제 첨가용색소 규격 확인

우리 협회는 수의과학연구소에 유방염 치료용 연고제 제에 대한 색소 첨가를 위하여 규격에 적합한 식용 색소를 일괄 구매하여 소요업체별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아래의 색소견본품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신청하였다.

- 가. 색 소 명 : 식용색소 정색1호
(Brilliant blue F.C.F, FD&C BLUE NO.1)
- 나. 원 산 지 : 중국
- 다. 제 조 자 : LION HEAD
- 라. 수 출 자 : (中國南光珠海公司)
CHINA NAMKWONG ZHUHAI CORPORATION
- 마. 검사 확인내용

구 분	규 격
외관	표준품과 유사 하여야 함
용상(1% 수용액)	표준품과 동등 하여야 함
함량	9.2 ± 2%
함습도(건조감량)	5.0%
염화물	3.0% 이하
최대흡수파장	630 ± 2nm
다른 색소	검출 되어서는 안됨
비소	4µg/g 이하
크롬	50µg/g 이하
망간	50µg/g 이하
납등 중금속(납으로서)	50µg/g 이하
입자 크기	10 - 20µm

※ 일본 식품 첨가물 공정서

20. 유방염 연고제 첨가색소 소요량 조사

국내 유방염연고제 제조용 색소의 공동구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는 적정규격의 색소 구입 및 가공에 어려움이 있어 중국의 미세화된 색소의 견본품을 수의과학연구소에 적정성 검토중이며 결과가 합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한등을 통하여 일괄구입한 후 해당업체별로 배분코자 소요량을 신청 받고 있다. 색소 첨가는 '96년 7월이후부터 검정신청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적용시점을 기준한 정확한 소요량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업체별 부표의 일괄 허가변경을 위하여 협회에서 취합하고 있는 관련 서류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가 변경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

21.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주)엘지화학[대표 : 성재갑]은 품질관리 우수약품 제조관리 기준중 주사제에 대한 실시 적격 판정을 받아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받았다.

22. 클로람페니콜제제 허가변경

협회의 [동물약품 품질관리 특별 대책위원회]는 클로람페니콜제제의 적정사용을 위하여 애완동물 전용 포장단위의 변경과 불요불급한 경우 업체 자율적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권고한 바, 일부 해당업체로부터 일괄적인 허가변경 및 포장단위의 확정을 요청하여 온 바,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편의도모를 위하여관련제품들에 대한 품목변경서류 등을 5월 3일까지 일괄취합하여 농림수산부에 변경신청할 예정이며, 허가변경시 포장단위는 주사제 20ml, 산제 5g 이내로 정하였다.

23. 인터넷을 통한 수출시장 안내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수출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안내하였다. '96 유망중소기업 박람회란 방을 인터넷에 하나의 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로스텍사에 동물용의약품 시장에 대한 방을 따로 열어 업체별 기업소개(회사로그, 건물사진, 대표자사진, 문자로된 회사소개), 상품 및 온라인 판매자료 등을 문자, 사진, 그래픽, 동화상, 음성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24시간 홍보할 수 있다. 인터넷의 파일인 홍보자료(HTML file)가 있는 업체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고 HTML file이 없는 업체는 최저가로 제작대행 하며 1년간 홍보비를 무료로 운영한 뒤 효과 등을 파악해 보고 차년부터 운영비를 내게된다.

24.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 홍보요청

협회에서는 동 허용기준의 고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 운용을 위하여 동물약품에 대한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업체로부터 기준설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아 기술적 협의를 진행중이나 각 품목별 자료 취합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중 일부 사료공장에서 동 기준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동물약품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하는바, 각 업체는 사료공장과의 기술협의를 고시 취지 및 운용 방향과 범리적으로 동 허용기준은 "사료의 안전성 지도기준"으로서 사료관리법 시행령상의 "유해사료"와는 별도의 개념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의·개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5. 협회 직원 변동사항 안내

구 분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신규채용	이 해 천	대 리	기획조사부
	한 해 숙	사 원	
	김 난 정	사 원	
사 직	소 현 희	사 원	